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필증

1. 상호(명칭) :	(주)성보씨엔이
-------------	----------

2. 성명(대표자): (주)성보씨엔이 (생년월일: 1911년 01월 11일)

3. 주소(사업장소재지):

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기업단지로 246

(전화번호:

4.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내역

가. 관리대상시설의 종류 및 명칭: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성보개발(주)

나. 오염물질의 종류 및 저장용량: 저장시설:총8기 총용량:800,000.00 &

다. 그 밖의 주요내용 :

5.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내역

가. 방지시설의 종류 : 부식방지도장, 이중 누유검사관 설치, 탱크실 설치

나. 설치내용 :

다. 그 밖의 주요내용: 탱크실설치

6. 누출검사대상시설 여부

[□] 해당 [□] 해당하지 않음 [■] 확인을 신청하지 않음

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 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0조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(변경)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2007년 4월 5일

경기도 안성사장이라

<변경 사항>

일 자	내 용	확 인
2010-07-22	법인 상호 변경 : 성보개발(주)→(주)성보씨엔이	
2011-12-14	임대차에 의한변경 : (주)성보씨엔이→김용일	변신숙
2012-03-05	임대차 계약 해지 : 김용일 → (주)성보씨엔이	조지현

<참고사항>

일	자	내 용	확	인

<저장시설>

시설명	오염물질	용량(단위)	수량(기)	완공일	시설형태
지하저장탱크	경유	100,000.0 ℓ	4	2007/04/02	지하탱크
지하저장탱크	등유	100,000.0 ℓ	4	2007/04/02	지하탱크

<행정처분사항>

자	내 용	확	인
	자	자 내 용	자 내 용 확